##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0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김예지・이달희・송석준

최수진 · 김소희 · 서명옥

서천호 · 김선교 · 김위상

진종오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매년 5만 명 이상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.

그러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'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' 결과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.1%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. 이로 인해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게 충 분한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, 지방 공연장의 저 조한 가동률은 지역 문화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% 이상으로 설정하고, 공연 프로그램의 30%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진 예술

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수립에 관하여"를 "수립과제3항에 따른 기초예술분야 공연 프로그램의 종류 등에"로 한다.

- ③ 제2항제2호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연간 공연장 가동률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
- 2. 연간 공연 프로그램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초예술분야 공연 프로그램에 배정할 것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	제8조의2(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종합계획) ①・②	운영에 관한 종합계획) ①·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제2항제2호의 공연 프로그
	램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
	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	1. 연간 공연장 가동률이 100분
	<u>의 70 이상일 것</u>
	<u>2. 연간 공연 프로그램의 100분</u>
	의 30 이상을 기초예술분야
	공연 프로그램에 배정할 것
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	<u>4</u>
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	수립과 제3항에 따른 기초예술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분야 공연 프로그램의 종류 등
	<u>에</u>